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불인증

무엇을 의미하나



글: [Reid Whitten](#) 및 [Fatema K. Merchant](#)
및 [J. Scott Maberry](#) (2017년 10월 13일 [세계무역](#)에 게시)

10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불인증 (decertification) 할 것인가

▶ ‘불인증(decertification)’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은 당분간 미국의 단독적인 사안이다. 이란은 이란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따라 미국과 유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핵 계획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JCPOA에 서명한 직후, 미 의회는 ‘이란 핵 협정 검토 법(INAR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매 90일마다 의회에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지 이 두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INARA 하에서 이란을 불인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2차 제재는 자동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인가?

JCPOA에 따라 해제된 미국의 제재 조치는 불인증시 자동적으로 재개되지 않는다. INARA에 따른 미국 제재의 재개는 의회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 JCPOA의 모든 서명국들과 트럼프 내각의 많은 사람들은 JCPOA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지만, 기본적인 대응 방법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에 있다.

INARA 법안의 제재 옵션은 비교적 간단하다: INARA 법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이란과 거래하는 ‘비-미국인(non-U.S.persons)’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2016년 1월에 핵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있었던 미국의 매우 강경한 이란 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재개할 것이다.

INARA는 의회가 대통령의 불인증 후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을 두었다. 의회는 대통령의 불인증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60일 기한을 넘길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분간 JCPOA에 따른 완화된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매 90일마다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다시 불인증 하거나, 결정을 바꾸는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쪽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게 인증 보고의무를 중단하기 위한 INARA의 개정을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조치 완화가 유지되고, 대통령은 인증보고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UN 제재는 다시 재개될 것인가?

이란에 대한 UN 제재는 불인증 결과로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핵 협정의 시행은 미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JCPOA를 지지했다. 또한, 유엔기구인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현재까지 협상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유엔 (또는 그 회원국들 중 어느 누구도)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으로 인하여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 **Pre-2016 년 미국 제재의 재시행은 무엇을 의미하나?**

JCPOA 이전에 미국은 일련의 2 차 제재 조치를 취했었다. 2 차 제재 조치는 ‘미국 이외의 기업(non-U.S. entities)’, 특히 은행이 이란과의 특정 거래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이란을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미국 은행들(non-U.S. banks)’은 재시행 되는 제재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가 재개되면, ‘비-미국인들(non-U.S. persons)’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미국계 은행이(non-U.S. banks)’ 미화달러 거래를 이란과의 특정거래를 위해서 ‘대리 계좌 (Correspondent Account)’ 또는 ‘결제 계좌(Payable-through Account)’ 를 사용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Pre-2016 제재의 재시행은 다음과 같은 거래가 비록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비-미국 인(non-U.S. persons)’에 의해 행해지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 이란 중앙 은행 (CBI) 및 대부분의 다른 이란 금융 기관과의 거래를 수행하는 은행;
2. 이란 Rial(이란의 화폐단위)과 관련된 액수가 큰 거래를 하거나 이란 정부에 미국 은행권을 제공하는 은행;
3. CBI 또는 다른 이란 은행에 금융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4. 에너지, 선박운송 또는 자동차 부문에서 액수가 큰 거래를 하는 ‘비-미국 기업(non-U.S. entity)’ ;및
5. 정부 채권을 포함하여 이란의 정부 부채를 구매, 구입 또는 발행을 지원하는 ‘비-미국 기업(non-U.S. entity)’.

또한, 미국 기업의 ‘비-미국 자회사들(non-U.S. subsidiaries of U.S companies)’은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 JCPOA 의 다른 서명국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회가 이란에 대해 pre-2016 제재를 재시행한다면 미국은 JCPOA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JCPOA의 ‘스냅 백(Snapback)’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이란에 대한 EU 제재를 자동으로 재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JCPOA의 다른 서명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UN과 EU 제재를 완화할 해결책 개발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개재되면, 특히 은행에 대한 2 차 제재의 경우, ‘비-미국 이란 비즈니스(non-U.S. Iran Business)’ 는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며, 이란은 JCPOA를 이행 할 의무가 없다.

▶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 해야 하나?

10 월 15 일 불인증으로 인해 JCPOA가 자동적으로 종결되지 않더라도, 종결될 위협은 실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란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비-미국회사(non-U.S. Company)’ (미국 기업의 비-미국 자회사들) 는 대비책을 보유해야 한다. 웨퍼드멀린은 한국 기업들을 위해 대비책 및 미 제재 법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기업들은 2 년 전 있었던 이란 비즈니스에 대한 엄격한 재정적 제재와 같은 상황을 염두해 두고 현재 비즈니스의 무산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